

■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4]

영양표시 대상 식품등(제6조제1항 관련)

1.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- 가. 레토르트식품(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, 축산물은 제외한다)
- 나. 과자류 중 과자,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·아이스크림류
- 다. 빵류 및 만두류
- 라. 코코아 가공품류 및 초콜릿류
- 마. 잼류
- 바. 식용 유지류(油脂類)(동물성유지류,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, 식물성크림,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)
- 사. 면류
- 아. 음료류(다류와 커피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)
- 자. 특수용도식품
- 차.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
- 카. 즉석섭취·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
- 타. 장류(한식메주, 한식된장,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)
- 파. 시리얼류
- 하. 유가공품 중 우유류·가공유류·발효유류·분유류·치즈류
- 거. 식육가공품 중 햄류, 소시지류
- 너. 건강기능식품
- 더.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

2.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- 가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영업자가 제조·가공하는 식품
- 나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
- 다. 식품,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,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
- 라.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